

기초교양교육원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11.2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기초교양교육원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업무) 교육원은 한국항공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인재상 구현을 위한 기초교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창의적 인재, 실용적 인재,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
2. 교양교육과정 개발·운영
3. 교양비교과 프로그램 개발·운영
4.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
5. 그 밖에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

제3조 (원장)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운영을 총괄 한다.

②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조직) ① 교육원에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② 행정실은 예산운영, 학사관리, 서무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5조 (교양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에는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양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
③ 교무처장, 기초교양교육원장, 인문자연학부장, 영어교육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외의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11.2>

④ 교양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교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
2. 교육원 운영에 대한 사항

3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교양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교양 책임교수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.

제6조 (기타)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내규·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